

檢 討 報 告

검토자 :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선

1. 提出者: 瑞山市長

2. 提出日字 : 1997. 6. 17

3. 提案理由

- 대형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동·리지역 인구증가로 동·리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.

4. 主要骨子

- 고북변란의 신정리 구역에 '신정3리'와 '신정4리'를 신설하고자 함.

5. 檢討意見

-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산시 읍·면·동·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
-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있는 지역의 동·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음.